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제22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종교집회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가목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종교집회장”으로 한다.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사업관련 자진이주자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접수번호	11
------	----

2003. 3.  
도시관리위원회

1. 경 과

- 청 원 자 : 송파구 방이동 199-1 이달원 외 5인
- 소개의원 : 한응용 의원 (건설위원회)
- 접수일자 : 2003. 3. 3
- 회부일자 : 2003. 3. 4
- 상정일자
  -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3. 3. 20) 상정, 취지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청원요지

-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백제고분군 조성사업 지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 129세대 중 64세대는 “사업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진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최우선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강동구청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자진 이주하였으나,